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5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이인선 · 강대식
조지연 · 고동진 · 김기웅
박준태 · 김 건 · 이달희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 매점 상품은 군인과 군인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,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됨.

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는 복지시설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).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)”을 “(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재판매”를 “영리의 목적으로 재판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제1항을 위반하여 군 매점 상품 등을 영리의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한 자 또는 재판매를 알선한 자
2. 그 밖에 해당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방부장관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③ 제2항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의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④ 국방부장관은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를 예방·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) 군 매점 등 복지시 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 을 <u>재판매</u>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u><신 설></u>	제15조(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) ① ----- ----- -- <u>영리의 목적으로 재판매</u> --.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<u>제한할 수 있다.</u> 1. 제1항을 위반하여 군 매점 상품 등을 영리의 목적으로 <u>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</u> <u>자 또는 재판매를 알선한 자</u> 2. 그 밖에 해당 복지시설의 정 상적인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방부장관이 이용을 제 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<u>자</u> ③ 제2항에 따른 군인복지시설 의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 ④ 국방부장관은 군 매점 상품 등의 <u>재판매 행위를 예방·단</u> <u>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·</u>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

감독을 할 수 있다.